

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 상승으로 인한 추락 사망

재 해 개 요

2018.○○.○○ 경북 ○○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 위에서 화물용 탑차로 옮기는 작업 중 리모트 컨트롤 다이얼 오조작으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가 갑자기 상승하여 운반구에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재 해 상 황 도

[사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]



[화물용 탑차 적재함과 높이 맞추어진 운반구]



재해발생 원인

-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추락예방 안전조치 미흡
 - 이삿짐 등의 중량물 취급작업 시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·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나,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불안전하게 이삿짐(중량물) 취급 작업 수행
- 보호구(안전모) 미착용
 - 보호구(안전모)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
- 이삿짐사다리 리프트 권과방치 등 미설치
 - 해당 이삿짐사다리 리프트의 경우 권과방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가 미설치

예방대책

-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 추락예방 안전조치 강화
 -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·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및 그 작업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작업토록 조치
- 보호구 착용 철저
 - 안전모,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함
- 이삿짐사다리 리프트 권과방치 등 설치
 - 권과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토록 조치